

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시한연장임
- 목적 :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민간병원 유치 촉진

□ 주요골자

-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(영동군, 진천군, 단양군 관할지역)에서
- 병원 설립자로 지정된 자의 병원용 건축물과 부속토지, 환자수송용 자동차 취득시 도세 면제
-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